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. 12. 24 선고 2024가단701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1. 26.

판 결 선 고 2024. 12. 2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평면도 표시 2, 3, 8, 7,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(ㄴ) 부분 10㎡과 같은 도면 표시 4, 5, 10, 9,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(ㄷ) 부분 15㎡를 인도하고, 2024. 4. 1.부터 위 각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갑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부분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2023. 8. 6.경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.

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,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,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이를 다투는지 불분명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.

2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, 2024. 4. 1.부터 위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이금진

별지